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9.

발 의 자 : 이정문 · 윤준병 · 문진석
이학영 · 안태준 · 김병기
한민수 · 이인영 · 박홍배
강준현 · 이재관 · 이연희
모경종 · 문금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,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·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,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, 설명회 등 다양한 방

식으로 지역 주민,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신설).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주민 등의 의견 수렴) ①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공청회,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(이하 “공청회등”이라 한다)으로 지역 주민,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 주민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9조의2(주민 등의 의견 수렴)</u></p> <p>① <u>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공청회,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(이하 “공청회등”이라 한다)으로 지역 주민,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 주민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